
- 2019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척시
[기획감사실]

2019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계			20건	주의 12 시정 8		1,020,000		
1	○○○	2017~ 2019	세입금 처리 부적정	주의				
2	○○○	2017~ 2019	장애인복지 서비스 민원신청 처리 미흡	주의				
3	○○○	2018~ 2019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환급	24,000		
4	○○○	2018~ 2019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환수	192,000		
5	○○○	2018~ 2019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80,000		
6	○○○	2018~ 2019	준공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263,000		
7	○○○	2018~ 2019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385,000		
8	○○○	2018~ 2019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주의				
9	○○○	2017~ 2019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부적정	주의				
10	○○○	2019	납기 내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미실시	시정				
11	○○○	2017~ 2019	어르신 목욕권 관리 업무 소홀	주의				
12	○○○	2019	민원사무처리 지연	주의				
13	○○○	2018~ 2019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주의				
14	◇◇◇	2019	건설공사 면허 적용 부적정	주의				
15	◇◇◇	2018~ 2019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 업무 소홀	주의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16	◇◇◇◇	2017~ 2019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환급	56,000		
17	◇◇◇◇	2018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주의				
18	◇◇◇◇	2019	강사료 지급 부적정	주의				
19	◇◇◇◇	2019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	20,000		
20	◇◇◇◇	2017~ 2019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입금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입금 처리 부적정 현황

(단위 : 건, 원)

과목별	연도별	건수	금액	비고
계		1,452	35,136,530	
다량폐기물	소 계	590	24,423,530	
	2017	67	2,513,500	
	2018	253	12,186,460	
	2019	270	9,723,570	
대형생활폐기물	소 계	862	10,713,000	
	2017	143	1,811,000	
	2018	402	5,448,000	
	2019	317	3,454,000	

2. 내 용

「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는 일시적 다량 폐기물을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입금 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세입의 취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나, 폐기물 등 일부 수수료의 경우 수납대행점과의 거리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공무원이 현금을 수납 후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달리 이를 대체할 방법 역시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에 따른 수수료를 수납 후 수납한 현금에 대해서는 일일 결산을 거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상의 자료 입력 및 징수결정결의서(「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전수에 걸쳐 1,453건 35,146,530원에 대하여 최소 2일 최장 15일에 걸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당자가 현금을 임의로 자신의 관리 하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에 따른 수입금 발생 시 회계법령에 따라 수납한 다음날까지 납입하여 주시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장애인복지 서비스 민원신청 처리 미흡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해당연도	민원접수	비 고
합 계		239	
장애인등록 신청	소계	52	
	2017.9월 이후	7	
	2018	24	
	2019	21	
기타서비스 신청	소계	187	
	2017.9월 이후	20	
	2018	98	
	2019	69	

※ 기타서비스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2. 내 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및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이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또한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된 사무이므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최종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에 의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¹⁾을 찍어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접수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239건에 대하여 ○○○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문서에 표시인을 찍지 않는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민원신청 업무처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

민원서류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처리과 기록물 등록번호

【처 분 요 구】

- 민원서류 접수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0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24,000원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부과일자	부과사유 (지연기간)	부 과 금 액 (원)			비 고
				기준액	착 오 부과액	정 상 부과액	
계	3건			120,000	48,000	24,000	24,000원 과다부과
1	*** (**,**,**)	2018.06.15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3개월 이내)	30,000	12,000	6,000	6,000원 과다부과 (감경률 오적용)
2	*** (**,**,**)	2019.01.04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6개월 미만)	40,000	16,000	8,000	8,000원 과다부과 (감경률 오적용)
3	*** (**,**,**)	2019.02.1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6개월 이상)	50,000	20,000	10,000	10,000원 과다부과 (감경률 오적용)

2. 내 용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²⁾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2017.12.1.>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5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주민등록법」 감경대상자와 동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과태료 부과 시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 감경대상자일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거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감경률이 75%로 증가하였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닌 주민등록법을 적용하여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3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주민등록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50% 감경만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과다 부과하여 재정적 부담을 주는 등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2)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처 분 요 구】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 부과·징수한 주민등록 과태료 24,000원을 환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192,000원

【제목】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월액여비 초과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지급일	집행내용	대상자	관내출장 일수	지급액	정당액	초과 지급액
계	8건				1,920,000	1,728,000	192,000
1	2018.07.03	6월 관내출장여비	***	12일	240,000	192,000	48,000
2	2018.07.03	6월 관내출장여비	***	14일	240,000	224,000	16,000
3	2018.07.03	6월 관내출장여비	***	14일	240,000	224,000	16,000
4	2018.10.01	9월 관내출장여비	***	14일	240,000	224,000	16,000
5	2019.02.28	2월 관내출장여비	***	13일	240,000	208,000	32,000
6	2019.02.28	2월 관내출장여비	***	14일	240,000	224,000	16,000
7	2019.06.26	6월 관내출장여비	***	13일	240,000	208,000	32,000
8	2019.06.26	6월 관내출장여비	***	14일	240,000	224,000	16,000

2. 내 용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는 「2018년도 월액여비 지급기준 개선 사항 알림」 [기획감사실-4185(2018.4.2.)]을 통해 월액여비 지급한도액을 월 225천원에서 월 240천원으로 증액하고, 2018년 4월 상시출장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근무지내 국내출장에 따른 월액여비를 지급하면서 관내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감액 없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여 기준보다 192천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라 초과 지급된 월액여비 192,000원을 환수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80,000원

【제 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수입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도급업체	인지 미소화액
계	4건	0		80,000
2018.05.03	**1,2리 ***** 응급복구공사	**,***,***	*****	20,000
2018.10.31	*** 3차 **구입	**,***,***	*****	20,000
2019.03.22	**2리 마을쉼터 ***** 구입설치	**,***,***	*****	20,000
2019.05.10	*** *** 정비공사	**,***,***	*****	20,00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

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4건 46,943천원을 집행하면서 인지세 납부대상임에도 수입인지 80,000원을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80,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63,000원

【제 목】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지출일자 (계약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천원)	정산 구분	미정산 금액(천원)	비 고
계	2건		0		263	
2018.06.27	**3리, *** **(**) 조성공사	(주)****	**,***	폐기물 처리비	124	증빙서류 없음
2019.05.03	*** ** 설치공사	****(주)	**,***	폐기물 처리비	139	처리톤수 부족 (계상 39톤, 처리 36.12톤)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준공에 따른 공사대가를 지급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폐기물처리비의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없거나 폐기물처리톤수가 부족함에도 준공정산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미정산한 폐기물처리비 263,000원에 대하여 감액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38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 도	미소화 건수	미소화 금액	비고
2018 ~ 2019년	12건	385천원	

※ 세부내역 붙임참조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 [별표 2] 면제대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12건 30,766천원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385천원을 미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385,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현황

지급일자	집행내용	지급인원	지출처	지급액(원)	견학장소	비고
계	2건			0		
2018.08.31	2018년 ***** *** 견학	**명	*** (****)	*,***,***	***	국외시찰
2019.08.23	2019년 ***** *** 견학	**명	*** (****)	*,***,***	**	국외시찰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301-09)은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보상금(301목) 통계목은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행사실비보상금(301-09)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입금하고,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일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국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며,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령 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³⁾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행정안전부훈령) 제50조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는 계좌입금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었으나, 2016.12.27. 일부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따라서, ○○○에서는 △△△△△△ ▼▼▼ 견학 시 국내시찰을 할 수 있

3)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 ①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 ③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 ④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 ⑤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견학 참석여부 확인 및 교통비·식비 등의 영수증 징구 등을 통해 실비 정산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2018~2019년 ◆◆◆◆◆◆ ◆◆◆ 견학을 실시하면서 규정과 다르게 국외시찰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였고, 견학 참석여부도 확인(참석자 등록부 징구 등)하지 않아 불참자 여부 파악이 불가능 하였으며, 실비 정산을 위한 영수증 징구도 하지 않는 등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행사실비보상금 지출 시 정당채주에게 계좌입금하고 실비 정산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고,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내역

민원인		농지취득자격증명(주말·체험영농용) 발급내역					
주소	성명	신청일	소재지	지번	신청면적(m ²)	소유면적(m ²)	취득목적
삼척시 *** **	***	17.07.26	○○○ ***	****-****	992	496	주말체험
동해시 *** **	***	17.02.20	○○○ ***	****-****	304	2,457	주말체험
삼척시 *** **-**	***	18.06.20	○○○ ****	****-****	78	1,563	주말체험
삼척시 *** ***** **-**	***	19.08.19	○○○ ****	****-****	145	3,207	주말체험

2. 내 용

「농지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2

항제3호의 규정에는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는 경우에는 1,000㎡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신청인이 신청 농지를 포함하여 1,000㎡이상인 경우에는 “농업경영용”으로 발급하고, 신청농지를 포함하여 1,000㎡미만인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취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이용실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취득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7년7월26일부터 2019년9월10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청인의 신청 면적과 농지소유 전체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4건을 발급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농정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납기 내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미실시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건, 원)

연도별	과목별	최초납기	건수	금액	비고
2019	소하천점사용료	2019.03.31	9	1,333,850	

2. 내 용

「삼척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5조(징수)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9년 소하천점사용료 정기분 9건 1,333,850원에 대하여 납기일이 지났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독촉장을 발송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소하천점사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지방세징수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어르신 목욕권 관리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어르신 목욕권 배부 현황

(단위 : 매)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상반기)	비 고
3,374	1,199	649	1,526	

2. 내 용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 제10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반기별로 수령한 목욕권을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에 의거 목욕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삼척시 사회복지과-49500(2018.9.5.)호의 <어르신 목욕권 배부관련 지

급대상자 신분확인 철저 안내>에 따르면 목욕권 배부시 반드시 지급대상자 본인에게 교부하고,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통한 배부시에는 대리인에 대한 신분확인 및 수령확인(날인 및 서명)을 필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르신 목욕권은 사업대상자 본인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이장을 통해 전달 시에는 배부대상자 대리수령하는 자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고, 별도의 수령명부를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확실히 전달 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어르신 목욕권을 주소지 관할 이장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일괄배부를 하면서 대상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었는지 사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리수령자의 인적정보나 관계를 배부대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한 수기대장관리가 아닌 전자적 문서로 목욕권 수불관리를 하고 있으나 2018.7.9.~7.13.기간의 수불부에는 총 847매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후 2018.10.29.~11.2.기간의 수불부에는 총 647매를 지급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목욕권의 지급매수와 잔여매수 현황과약에 일관성이 없으며, 수불대장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목욕권 수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어르신 목욕권 배부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불대장을 철저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 목욕권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 목욕비 지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민원사무처리 지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민원명	민원인	담당자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일	비고
계	3건						
가설건축물준치기간 연장신고	***	***	'19.04.25	'19.04.29	'19.05.08	9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19.04.08	'19.04.11	'19.04.18	7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	***	***	'19.06.12	'19.06.13	'19.06.14	1일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㉔㉔㉔에서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신고서류가 미비할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처리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그런데, ㉔㉔㉔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등 3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신고서류 미비나 관련서류 제출 지연을 이유로 처리기한을 넘겨 민원을 해결하는 등 민원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사무 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현황

지급일자	집행내용	지급인원	지출처	지급액(원)	견학장소	비고
계	3건			0		
2018.09.04	2018년 ***** *** 견학	**명	*** (**)	*,***,***	** , **	
2019.04.19	2019년 상반기 *** ***** *** 견학	**명	*** (**)	*,***,***	** , **	
2019.08.30	2019년 하반기 *** ***** *** 견학	**명	*** (**)	*,***,***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

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301-09)은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보상금(301목) 통계목은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행사실비보상금(301-09)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⁴⁾를 적용하여 계좌입금하고,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일반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국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며,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령 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⁵⁾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행정안전부훈령) 제50조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는 계좌입금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

4) 1인당 1식 8,000원 이내

5)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 ①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 ③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 ④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 ⑤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정이 존재했었으나, 2016.12.27. 일부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따라서, ○○○에서는 ▷▷▷▷▷▷ ♡♡♡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시 정당채주인 ♥♥♥ 개인별로 지출해야 하며, 견학 참석여부 확인 및 교통비·식비 등의 영수증 징구 등을 통해 실비 정산을 실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2018~2019년 ☘☘☘☘☘☘ ◆◆◆ 견학 계획을 수립하면서 식비를 1인당 1일 4만원~4만5천원으로 산출하였으며, 견학 참석여부도 확인(참석자 등록부 징구, 결과보고 등)하지 않아 불참자 여부 파악이 불가능 하였고, 실비 정산을 위한 영수증 징구도 하지 않는 등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행사실비보상금 지출 시 정당채주에게 계좌입금하고 실비 정산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고,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건설공사 면허 적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면허 적용 부적정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도급업체	계약면허	적정면허
***** **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	****.**,**.~ **.**	**,***	****	시설물 유지관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2.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해당공사에 맞는 건설업종을 정하여 해당면허를 보유한 적정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주요공종에 해당하는 전문건설 업종을 보유한 적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적정면허를 미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전문건설 업종을 보유한 적정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도	계	신청인 서명 누락	대리인 인적정보 누락	개인정보 동의 미징구
2018~2019년	36건	31건	4건	1건

※ 세부내역 별첨

2.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는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이나 인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7.9월부터 2019.9월말까지 장애인 등록증 및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신청업무 333건중 326건에 대하여 카드발급을 위한 사진을 별도로 받지 않으면서도, 신청자의 서명이나 인장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서비스 신청일자를 누락하거나 신청서상 신청인의 서명이 날인되지 않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처리 하는 등 장애인등록 신청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을 대리 신청하는 자의 정보를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 등록증 교부등)제2항에 따른 제1호의2서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 신청인의 관계 등 인적정보를 누락한 채 카드발급 신청서를 처리하였으며,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을 처리하면서 카드발급을 위한 필수서류인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민원업무 처리 시 신청서 서명, 관련정보 및 동의서 장구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56,000원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부과일자	부과사유 (지연기간)	부과금액(원)			비고
				기준액	착오 부과액	정상 부과액	
계	7건			280,000	112,000	56,000	56,000원 과다부과
1	*** (**.**.**)	2017.12.29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6개월 미만)	40,000	16,000	8,000	8,000원 과다부과 (감경률 오적용)
2	*** (**.**.**)	2018.01.23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6개월 이상)	50,000	20,000	10,000	10,000원 과다부과 (감경률 오적용)
3	*** (**.**.**)	2018.06.21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3개월 이내)	30,000	12,000	6,000	6,000원 과다부과 (감경률 오적용)
4	*** (**.**.**)	2018.09.18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6개월 이상)	50,000	20,000	10,000	10,000원 과다부과 (감경률 오적용)
5	*** (**.**.**)	2018.10.17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6개월 이상)	50,000	20,000	10,000	10,000원 과다부과 (감경률 오적용)
6	*** (**.**.**)	2018.10.22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3개월 이내)	30,000	12,000	6,000	6,000원 과다부과 (감경률 오적용)
7	*** (**.**.**)	2019.08.27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3개월 이내)	30,000	12,000	6,000	6,000원 과다부과 (감경률 오적용)

2. 내 용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2017.12.1.>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5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주민등록법」 감경대상자와 동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과태료 부과 시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 감경대상자일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거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감경률이 75%로 증가하였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닌 주민등록법을 적용하여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지연건’ 7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주민등록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50% 감경만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과다 부과하여 재정적 부담을 주는 등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6)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처 분 요 구】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 부과·징수한 주민등록 과태료 56,000원을 환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내역

신고일자	신고자	차량번호	배기량	부과누락현황(원)		
				구분	부과액	누락액
2018.10.02	***	강원삼척*****	690cc	누락	0	15,000
2018.10.24	***	강원삼척*****	646.9cc	누락	0	15,000

2. 내 용

「지방세법」 제23조에 의하면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⁷⁾을 원인으로 이루어

7)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제1항에 따르면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125cc 초과는 “차량”에 포함되므로 취득 원인이 없는 즉, 사용폐지 및 소유권이전(양도양수)없는 재사용(부활), 번호변경 신고 시 법 제28조제1항제3호 라목의 그 밖의 등록에 따라 건당 등록면허세 15,000원 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3조 개정(2017.12.26.)으로 125cc 초과 이륜차중 과표미달(면세점 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등록)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 신고 시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사용폐지 신고 시 등록면허세 30,000원을 부과 누락하는 등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 부과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세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관련 신고 시 등록면허세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이륜자동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강사료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부적정 현황

내용	지급일자	강사명	지급액(원)	원천징수금액(원)		원천징수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 * *****사업 강사비	2019.03.29	***	250,000	15,000	1,500	6.6%

2. 내 용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

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2018.4.1.부터는 100분의 70, 2019.1.1.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원천징수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분	기존	18년 4월~	19년 이후	비고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소득세+지방소득세	4.4%	6.6%	8.8%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사업'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지급액에 대해 8.8%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6.6%만 적용하여 관련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원천징수 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관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지급액 - (지급액 × 80/100)] × 20/100 ⇨ 4.4%(소득세+ 지방소득세)
 ⇨ 과세최저한 : 25만원

【일련번호 : 1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20,0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지급내용	출동일자	출동자	지급액(원)	비고
산불발생 출동비 (***)	2019.04.09. 13:10분경	***	20,000	2019.4.9.~4.10 여수,순천 관외출장 실시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8조(출장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에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관내 산불발생(쓰레기 소각) 신고에 따른 출동자에 대해 출동비를 지급하면서 해당일에 ◆◆◆◆◆ 선진지 견학 인솔에 따라 전라남도 여수, 순천으로 관외출장을 실시하여 산불신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직원을 산불출동여비 지급내역서에 임의로 작성하여 출동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20,000원을 환수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2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회의참석수당 현금 지급 내역

연 도	건 수	지출금액(원)	비 고
2017 ~ 2019년도	29건	27,560,000	현금 지급

※ 세부내역 붙임참조

2. 내 용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이·통장이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이·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9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회계법」 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령 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¹⁰⁾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통장회의 및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현금취급 제한의 예외사유가 아님에도 운영비 사용 목적 등 편의상의 이유로 계좌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10)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 ①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 ③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 ④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 ⑤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